

이주현 노무사 「핵심정리 사회보험법」
제5판 사용자를 위한 정요표 (2020-04-29)

P37 내용수정

*(기존)

14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23, 령§25~29, 규칙§44

고용촉진 장려금	제한 노②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	----------	--------------------------------------------------------

*(수정)

14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23, 령§25~29, 규칙§44

고용촉진 장려금	제한 노②	대규모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	----------	-----------------------------------------------

P38 내용수정

*(기존)

14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23, 령§25~29, 규칙§4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o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 근로자에게 출산휴가or유사산휴가or육아휴직o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or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 출,유,육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 자가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연이어 출,유,육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고용) + 출,유,육 등이 끝난 후 출, 유, 육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단,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새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 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단,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육아휴직등 장려금액	고시금액 ×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개월 수 (단, 장려금중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 급)	
		대체인력 지원금	고시금액 × 출,유,육 등을 사용한 기간중 대체인력 사용한 기간 (대체인력사용한 기간에는 출,유,육 사용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초과 ×	

*(수정)

14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23, 령§25~29, 규칙§4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o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제외) 이상 허용 한 사업주	
		근로자에게 출산휴가or유사산휴가or육아휴직o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or 허용하고 대체인력 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 출,유,육 등의 시작일 전 60일 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연이어 출,유,육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고용) + 새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 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단,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지원 금액	육아휴직등 장려금액	고시금액 ×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개월 수 (단, 50%는 지원요건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고시금액 × 출,유,육 등을 사용한 기간중 대체인력 사용한 기간 (대체인력사용한 기간에는 출,유,육 사용전 2개월 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 지원요건 갖추면 지급 - 업무 인수인계기간 : 대체인력지원금의 100%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 대체인력지원금의 50%) (•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초과 ×

P55 내용수정

*(기준)

35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 §70~73, 령§95~95의2, 령§98, 령§104의2

육아휴직급여액 노㉠㉡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 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 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월별 상한액 250만원).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X())
	육아휴직급여의 75% 는 매월 지급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 일할계산사유발생시 최소지급액의 일할계산액), 나머지 25% 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기간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후 근로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	

*(수정)

육아휴직급여액 노①③	특례	같은 자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 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 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월별 상한액 250만원).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X)
		한 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 6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육아휴직 7개월 -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75% 는 매월 지급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 일할계산사유발생시 최소지급액의 일할계산액), 나머지 25% 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P229 080번 문제 정답수정

*(기존) 정답○ ⇒ *(수정) ×

080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 대규모 기업이

P230 082번 문제 문제수정

*(기존)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수정) ③ 대규모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P230 083번 문제 문제·해설수정

*(기존)

08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임신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에게 지급한다. ()

083 (×) 2018.12.31. 개정으로 삭제되어 해당 사항으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수정)

083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

083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의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P230 084번 문제 문제수정

*(기존)

08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수정)

08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P231 085-②번 문제 정답수정

*(기존) 정답○ ⇒ *(수정) ×

| **085-②** (×) 2020.3.31. 개정시 삭제된 요건이다. |

P231 086번 문제 정답수정

*(기존)

086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출산전후휴가등을 사용하기 전 2주 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포함한다. ()

| **086** (×) 2주 ⇒ 2개월 |

*(수정)

086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3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며, 해당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

| **086** (×) 3개월 ⇒ 2개월 |

P256 18번 문제 해설수정

*(기존)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수정)

3. 대규모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P258 22번 문제 정답수정

*(기존) 정답 ① ⇒ *(수정) ⑤

22 ⑤ 고보령 §28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답 >> 21 ② 22 ⑤

P262 28번 문제 해설수정

*(기존)

28 ① 육아휴직 시작~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150만원, 최저지급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100만원, 최저지급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수정)

28 ① 육아휴직 시작~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150만원, 최저지급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120만원, 최저지급액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P265 33번 문제 문제수정

*(기존)

33 <노무 2014 유사>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2만 4천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수정)

33 <노무 2014 유사>

甲(4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2만 4천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